■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Mercury sulfat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783-35-9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취급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노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노출시 위험하므로 보호의를 착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모든 취급시설의 경우 누출감지 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정전기 제거설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취급 또는 작업 시는 양압자급식호흡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고 고글형 보안경, 내화학성보호의, 고무(또는 네오프렌)재질의 장갑 및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작업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유출물질은 수로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분해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산화황, 수은 증기/수은 금속, 금속산화물의 독성 흄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 또는 독성 흄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황산 이온은 파이프와 부속품을 부식시키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열원, 아지드화물 등과 격리하여 밀폐보관 할 것.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제일수은염은 용기에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지 말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